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7.(금)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0.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409호)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1. 11. 24.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 가. 제안이유

- 민원처리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이의신청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정비(안 제12조)
- 이의신청 횟수를 1회에서 횟수 한도 내용 삭제(안 제12조 단서조항)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입법예고: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의견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이의신청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sup>1)</sup>을 적용하여 60일 이내로 정비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이의신청 횟수를 1회에서 횟수 한도를 없애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 6. 심사결과: 의견채택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 1)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17.(금)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6. 정해숙 의원 외 6명(의안번호 제430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1. 11. 24. 상정·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 가. 제안이유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를 정함(안 제3조)
-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을 정함(안 제4조)
-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을 정함(안 제5조)
- 교통소통대책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시정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 사무분장, 원상회복과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4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는 교통소통대책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7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는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원상회복,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관련 별표2의 제4호 나목 규정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 ④ (생략)

⑤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 ~ 3 (생략)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22개 자치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었으나,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가. 수정 이유**

- 안제2조 및 제9조의 문구를 변경하고자 함

### **나. 수정 내용**

- 안제2조제1호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수정
- 안제9조제3항 중 “구성하며” 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로 하고,
- 안제9조제3항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를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로 수정
- 안제9조제3항 단서조항 삭제
- 안제9조제6항 중 “공무원” 을 “구 소속 공무원” 으로 수정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 430 |
|----------|--------|

제안 연월일: 2021년 11월 24일

제안자: 도시건설위원회

## 1. 수정이유

안제2조 및 제9조의 문구를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제2조제1호 중 “동법” 을 “같은 법” 으로 수정
- 안제9조제3항 중 “구성하며” 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로,
- 안제9조제3항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를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로 수정
- 안제9조제3항 단서조항 삭제
- 안제9조제6항 중 “공무원” 을 “구 소속 공무원” 으로 수정

##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하며”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조항 삭제,.

제9조제6항 중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

#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u>동법 제18조에</u> 따른 “구도”를 말한다.</p> <p>2.·3. (생략)</p> <p>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p> <p>③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u>구성하며</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u></p> <p>1. ~ 3.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u>공무원이 아닌</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⑧ (생략)</p> | <p>제2조(정의) -----<br/>-----</p> <p>1. -----<br/>----- <u>같은 법 제18조</u>-----<br/>-----.</p> <p>2.·3. (현행과 같음)</p> <p>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br/>-----<br/>----- <u>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u><br/><u>되</u>-----<br/><u>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lt;단서 삭제&gt;</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u>구 소속</u><br/><u>공무원</u>-----<br/>-----.</p> <p>⑦·⑧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6일 초과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인 경우에는 적용대상공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기 및 통신공사
4. 전철·지하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할 것을 공사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및 원상회복 내용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도로의 굴착허가 담당분야의 공무원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에 구청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이 필요할 때마다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③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성북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

3. 관할경찰서 관계공무원

④ 자문회의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호선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 경우 최소 4명 이상 위원으로 자문회의를 운영 한다.

⑤ 제3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협의 등 검토 절차로 자문회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공사시행자는 자문회의의 자문내용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 보완서를 구청장에게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자문내용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따른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분장)**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의 굴착허가 담당부서 확인을 거쳐 자문회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① 구청장은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17.(금)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6. 김세운 의원 외 12명(의안번호 제431호)
- 나. 회부일자: 2021. 11. 1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1. 11. 24. 상정 ·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세운 의원 대표발의)

### 가. 제안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규정(안 제4조)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5조)
-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6조~제10조)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규정(안 제11조)
- 공동조사 대행 등 규정(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sup>2)</sup> 및 제12조<sup>3)</sup>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2)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의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지하개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노후에 따른 지반침하, 피해방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법 제34조4**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 도로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비로 4억6,0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4)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